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개정 안내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이 2005년 3월 15일에 개정·시행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조 항	개 정 이 전	개 정 이 후
실 사용자 위주의 전기수급거래 정착 (제8조, 12조)	( 신 설 )	건물주가 전기사용계약 해지 요청시 사용자 동의 없이는 해지불가
종합계약아파트 요금적용방법 개선 (제67조 2항)	고압공급아파트는 <단일계약, 종합계약(가), 종합계약(나)>방식으로 요금계산	고압공급아파트는 <단일계약, 종합계약>으로 단순화 (종합계약(나)폐지. 다만, 이미 종합계약(나)를 적용을 받고 있는경우에 희망에 따라 계속 적용 가능)
정전에 따른 기본요금 감면대상 확대 (제48조)	1일동안 5시간이상 정전시 1일마다 3.5%의 기본요금 감액	1일동안 3시간이상 정전시 1일마다 4%의 기본요금 감액
신규고객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확대 (제79조 1항)	사용자명의로 신청하는 주택용전력고객은 보증금 납부대상에서 제외	사용자명의로 신청하는 계약전력 5kW이하 고객은 보증금 납부대상에서 제외 (주택용전력 고객 포함)
해지 후 재사용시 고객부담 완화 (제16조)	1년이내 :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의 50%와 신규공사비 중 적은것	1년이내 :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의 50%와 신규공사비x50% 중 적은것
	1년이후 : 신규공사비	1~3년 : 해지기간중 기본요금(50%) + 설계공사비 와 신규공사비 중 적은 것 3년이후 :신규공사비 부과
공공요금 최초로 연체료 일수계산 도입 (제75조)	실연체일수에 관계없이 한달기준 연체료 부과(1개월 1.5%, 2개월2.5%)	납기 다음날부터 요금 납부일까지 일수계산하여 연체료 부과
저압고객 무효전력량계 설치대상 확대 (제38조 3항)	저압고객 중 계약전력 50kW이상 고객은 무효전력량계를 부설하여 매월 무효전력량계의 실적치에 의해 역률 부과	저압고객 중 계약전력 30kW이상 고객은 무효전력량계를 부설하여 매월 무효전력량계의 실적치에 의해 역률 부과
고압수전 아파트 고객에게 예비전력 공급 (제63조 5항)	주거용고객은 예비전력 공급대상에서 제외	주거용 고압수전 아파트 고객의 예비전력 공급요청시 공급
여름철 최대수요전력 적용기간 명확화 (제68조)	직전 12개월 중 7월, 8월, 9월 및 검침당월 중의 최대수요전력	직전 12개월 중 7월, 8월, 9월 및 당월에 고지한 전기요금 청구서의 사용기간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

조 항	개 정 이 전	개 정 이 후
장기간 미사용 고객의 계약해지 방법 개선 (제81조 3항)	휴지기간이 2년 초과 및 2년간 미 사용시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지	고객에게 통지하고 전기사용의사 확인(전화, 우편 등)후 계약해지
계약전력 결정기준 명확화 (제19조, 20조)	계약전력은 사용설비와 변압기설 비 중 작은 것 적용	계약전력은 사용설비와 변압기설 비 중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 고압이상으로서의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결정(다만, 현장여건상 사용설비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변압기설비로 결정)
아파트 공급전압 결정원칙 명확화 (제23조 2항)	아파트의 공급전압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	승강기를 설치한 6층 이상 아파트 는 고압공급
공사비 분할납부 확대 (제92조)	공사비는 전기사용개시일 이전까지 납부	공사비는 전기사용개시일 이후까지 분납가능(공급이후 2년까지 균등분 할상환 가능)
별계량 예비전력 고객의 기본요금 부과기준 개선 (제68조)	예비전력 최대수요전력으로 부과	상시전력 최대수요전력으로 부과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 기준 정비 (제18조의 2)	전기사용장소에 20이상의 계약종별 이 있거나, 전기공급방식이 서로 다른 저압사용설비가 있을 경우 또 는 전기사용장소가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이상의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구분 가능	전기사용장소에 20이상의 계약종별 이 있거나, 전기사용장소가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이상의 전기사 용계약단위로 구분 가능 *전기공급방식이 서로 다른 저압사 용설비는 삭제
1수급계약단위 1전기계기 부설원칙 구분 명시 (제22조 단서)	1전기사용계약에 1공급방식, 1공급 전압, 1인입 및 1계량으로 전기를 공급	1전기사용장소에 대하여 1공급장 소, 1공급전압 및 1인입으로 전기 를 공급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전기계기 로 계량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계 량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전기공급약관은 전기사업법 제16조(공급약관)에 의거 전기의 공급자인 일반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와 전기의 사용자인 고객, 즉 전기사용 양자의 전기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고 있는 부합계약입니다. 전기사용거래의 특성상 동형의 거래가 반복적,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또한 전 국민을 상대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거래의 신속화와 능률화라는 관점에서 전기공급절차를 정형화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의 약관과 마찬가지로 전기공급약관은 곧 전기사용거래에 관한 것이며, 전기공급약관에 대한 고객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 양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기공급약관 적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에 적용합니다.

※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선택공급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공급약관에 같음하여 이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비치하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문의 : 한국전력공사 영업처 영업계획팀 (02)3456-4521]

##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및 시행규칙개정령 입법예고 알림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 입법예고 및 시행규칙개정령이 입법예고 되  
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5-90호
- 입법예고기간: 2005. 4. 11 ~ 5. 2
- 관련문의: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 신재생에너지과 (Tel: 02-2110-5403)
- 전문참고: 산업자원부 [www.mocie.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http://www.mocie.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 1. 개정이유

2004년 12월 31일「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문 개정·공포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제도의 시행규칙 마련과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문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개정내용

#### 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개정

- 시행령의 제명 변경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시행령 ⇒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신 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 바이오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폐기물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
- 발전차액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설정
  - 기본적으로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제세공과금 등 발전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비용외의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반영
    - 설비용을, 수명기간, 사고보수율, 소내소비를
    - 기술상용화수준, 시장보급여건 및 전력거래가격 등
-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범위규정
  - 국제표준적합성 평가 및 상호인정 기반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의 기반구축 비용
  - 표준개발, 표준제안, 국제협력 등 표준화사업비

- 공용화품목의 지정·운영 및 지원규정 신설
  - 지정대상 : 한국산업규격(KS) 품목, 국제표준화 품목, 인증 품목
  - 지원대상 : 공용화품목의 개발 및 제조, 수급조절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및 지원내용 규정
  - 전문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차등하여 규정
    - 기술능력(4~6인), 자본금(3~8억원), 사무실(40~60㎡)
  -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정부지원 보급사업의 일정 쿼터를 직접수행
    -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자격 우대
    -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운영대행 등 장관 및 시도지사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정비
  -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고, 그 외의 업무는 전문성 및 편의성 등을 감안, 신·재생에너지 위탁

#### 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 시행규칙의 제명 변경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 설비인증 및 성능검사의 수수료 규정 보완
  - 시행규칙 별표에 수수료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기준에 따른 수수료금액을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보완
  - 수수료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 운영규정의 제정이나 변경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기타 법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함.
  - 발전차액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절차
  - 공용화품목의 지정 절차
  - 전문기업의 등록 절차
  - 통계전문기관의 지정(센터) 및 통계관리
  -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절차
  -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 절차

## 철도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철도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내용을 미리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16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15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4. 20 ~ 5. 10

○ 관련문의: 건설교통부/철도국 철도운영과 (Tel: 02-2110-8430)

○ 전문참고: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http://www.moct.go.kr)/정보미당/법령자료/입법예고)

### □ 철도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안)

#### 1. 제정이유

철도사업법(2004.12.31, 법률제7303호)이 제정되어 철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시행령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은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철도운임·요금의 상한을 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함.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은 시설물의 구조에 따라 5년, 15년, 30년으로 하고, 점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기간은 대상별 해당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나. 시행규칙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 수립된 때에 사업용 철도노선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철도사업약관에는 적용범위, 요금·운송책임 등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한 때에는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역 등에 비치하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년 주기로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시행함

## 철도건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알림

철도건설법시행령및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번호
  -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00호
  -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01호
- 입법예고기간: 2005. 4. 7 ~ 4. 27
- 관련문의: 건설교통부 철도국 일반철도과 (Tel: 02-504-0484)
- 전문참고: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 □ 철도건설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안)

#### 1. 제정이유

철도건설법이 제정·공포(2004.12.31, 법률 제7304호)되어 철도건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철도건설법 시행령

- 체계적인 철도망구축계획 및 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시행 위한 내용을 정립하고 고시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철도망계획의 수립 및 철도건설 관련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철도건설심의위원회 설치요율 방안을 정립
- 철도건설 사업실시계획 수립 내용 및 절차를 규정
- 국가이외의 자가 철도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거나 철도건설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비용분담기준을 마련하여 비용분담과 납부로 인한 분쟁을 사전 예방토록 하기 위해 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기준을 마련
- 역세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역사와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를 규정

##### 나.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 법 규정(제8조제2항)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부받도록 규정
-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는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준공보고서에 사업준공조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는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알림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번호 : 과학기술부공고제2005-62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4. 22 ~ 5. 2
- 관련문의 : 과학기술부 원자력 협력과 (Tel : 02-2110-3651)
- 전문참조 : 과학기술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기관의 수행 사업과 원자력통제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의 관련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량행위의 투명화 및 규제의 정비를 위해 인가 및 승인사항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기술료 및 산업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근거를 두도록 개선·보완것임.

### 2. 주요내용

〈국가원자력통제체제 관련〉

- 가. 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가칭)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 기관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정함.
- 다. 원자력통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관련연구자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 라. 원자력통제에 관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추가함.

〈원자력법 조항 정비 관련〉

- 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량에 관한 자료제출, 기술료 징수 및 산업재산권 등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근거하도록 함.
- 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표준설계 인가기준 및 유효기간을 법에서 규정하도록 함.
- 사.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이 미흡할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아. 핵연료물질 사용관련 허가 면제 사항을 일부확대함.
- 자.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차.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위임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기준으로 구체화 함.
- 카.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부과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알림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번호 : 노동부공고제2005-69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4. 15 ~ 5. 6
- 관련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Tel: 02-503-9742)
- 전문참고 : 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실/법령/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업주가 퇴직 또는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늦추거나 회피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시행령에 위임한 이자율 및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율을 연 20%로 정함.

- (1)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의 신설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일수만큼 소정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지연이자제도가 도입됨.
- (2) 동조 제1항은 미지급 임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연 20%),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연 25%),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2005.1월 현재 연 5.58%), 금융기관 연체금리(연 14 21%) 및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금리(연 12 27.8%) 등을 고려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율을 연 20%로 정하고자 함.
- (3)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될 경우 임금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임금지급을 지연·회피 사례가 크게 감소하여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촉진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를 정함.

- (1) 동조 제2항은 천재·사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2) 따라서 지연이율의 적용배제 사유를 천재사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사유,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지불에 충당하여야 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불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기타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정하고자 함.
- (3) 이러한 적용제외 사유를 정함으로써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거나, 법령상 절차적 제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급이 지연되거나, 법원 등에서의 다툼으로 인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함.